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324
----------	------

2023년 12월 19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10월 13일, 김춘곤 의원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다. 상정일자 : 제32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3년 12월 19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김춘곤 의원]

가. 제안이유

- 2023년 6월 5일 '국가보훈처'가 '국가보훈부'로 승격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'국가보훈처장'을 '국가보훈부장관'으로 개정함(안 제20조제1항제6호)
- '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'을 '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'으로 개정함(안 제20조제1항제1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‘국가보훈처’가 ‘국가보훈부’로 승격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정부조직법」 개정¹⁾으로 ‘국가보훈처’가 ‘국가보훈부’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하는 것으로,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음.
- 그 밖에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명이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,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1) [법률 제19228호, 2023. 3. 4, 일부개정] [시행 2023. 6. 5]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”을 “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“공원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.
5. “녹지”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.

제9조제2호 및 제3호 중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”를 각각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제1항제1호”를 “제1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”를 “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”로 한다.

제11조제2호 및 제3호 중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”를 각각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”를 “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”로 한다.

제12조제2호사목 중 “「철도안전법 시행령」 제63조”를 “「철도안전법 시행령」 제63조”로 한다.

제16조제1호 중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”를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6호 중 “국가보훈처장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11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”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30명 이상”을 “30명 이상”으로 한다.

8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공원관리청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·자치구청장을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4. “공원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.</p> <p>5. “녹지”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.</p> <p>제9조(점용허가대상 공원) 공원관리청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에 따른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“공원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.</p> <p>5. “녹지”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.</p> <p>제9조(점용허가대상 공원)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----- ----- -----</p>
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는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고시일부터2년이 경과한 공원

4.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공원관리청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원

5.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

제11조(점용허가대상 녹지)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에 따른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
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-----

4. 제1호-----

5.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-----

제11조(점용허가대상 녹지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-----

니한 녹지
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

4.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제12조(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)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(생략)
2.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
 - 가. ~ 바. (생략)
 - 사.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
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-----

4.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-----

제12조(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)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
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사. -----

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6.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참전유공자

7. (생략)

8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
9. · 10. (생략)

11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12. ~ 14. (생략)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30명 이상의 단체

3. (생략)

③ · ④ (생략)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국가보훈부장관-----

--

7. (현행과 같음)

8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
9. · 10. (현행과 같음)

11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-----

12. ~ 1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30명 이상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